



제429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산조회 대상에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 등 포함〉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288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7인

나. 제 안 일 : 2025. 9. 25.

다. 회 부 일 : 2025.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채납자 본인과 배우자·친인척 등 일정 범위 내의 금융조회는 가능하지만, 채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나 채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할 수 없어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실제로 가동 중인 법인 수와 채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액·상습채납 신규 명단공개자 가운데 법인 관련 채납액 비중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 누계채납액 역시 2022년 102.5조 원, 2023년 106.1조 원, 2024년 110.7조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법인을 통한 은닉재산에 대해 실효적 징수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함.

한편, 미국과 일본은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채납자 외 관련자의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관련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고, 금융실명법도 세

무조사 등 과세처분 단계에서는 제3자의 금융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고액·상습체납 대응 강화를 위해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까지 철저히 추적·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4조제1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채납액 5천만원 이상인 ① 채납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 ② 채납자가 대표자,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인 법인에 대해 채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	2. ----- ----- -----

현행	개정안
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 다. (생략) <u><신설></u> <u><신설></u> 3. ~ 8. (생략) ② ~ ⑥ (생략)	-----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체납한 법인의 대표자, 과점주 주 또는 무한책임사원(과점주 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인 법인을 제외한다)</u> <u>마. 체납자가 대표자,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인 법인</u>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하되,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

- 그 중 제2호1)에서는 조세와 관련하여 법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상속·증여재산 또는 조세탈루 혐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와 함께 체납자 및 5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한 경우 등을 그 사유로 열거하고 있음.

□ 한편, 최근 국세 체납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말 누계 기준으로 체납한 인원은 약 132만명, 건수는 약 550만건, 체납 규모는 약 111조원으로 나타나며, 2021년 이후의 통계를 보더라도 인원, 건수,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표 1] 국세 체납 현황(누계 기준)

(단위: 명, 건, 억원)

구분	인원	건수	금액
2021년	1,275,513	4,858,022	998,607
2022년	1,325,937	4,992,052	1,025,140
2023년	1,336,759	5,248,272	1,060,597
2024년	1,329,622	5,512,763	1,107,310

(자료: 국세통계포털)

- 국세청은 체납자 중에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를 고액·상습 체납자로 지정하여 그 명단을 공개²⁾하고 있는데, 매년 신규로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 수와 체납세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누계기준으로도 소폭 상승하고 있음.

[표 2]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현황

(단위: 명, 건, 억원)

구분	신규기준		누계기준	
	인원	체납세액	인원	체납세액
2021년	7,016	53,612	50,033	433,344
2022년	6,940	44,196	48,356	425,609
2023년	7,966	51,313	48,058	442,000
2024년	9,666	61,896	51,676	467,285

(자료: 국세통계포털)

- 2) 「국세징수법」 제114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체납자 중에서는 재산·소득이 없어 현실적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도 존재하고 있으나, 재산을 가족 또는 특수관계 법인 등에 은닉한 이후 호화로운 생활을 영유하는 고의적 납부 기피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³⁾됨.

- 체납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라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재산조회가 가능하나, 특수관계 법인 등에 은닉하거나 체납자인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재산조회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5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허용되고 있는 그 가족뿐만 아니라 해당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 또는 대표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등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재산조회를 위해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5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대해 과세관청이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⁴⁾할 수 있음.

3) 국세청 보도자료, 세금은 안내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실시, 2025. 11. 참조

4) 당초에는 체납자에 대해서만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청이 가능했으나, 2019년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5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도 재산조회가 가능해졌음.

○ 개정안은 이에 더해 5천만원 이상 채납액이 있는 채납자가 ①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법인인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 제외)에 대해, ② 자연인인 경우 채납자가 대표자,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인 법인에 대해 각각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실명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39조상 의미는 다음과 같음.

[표 1] 국세기본법 상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 개념

구분	주요내용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의 사원 ※ 합명회사란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로,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합자회사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출자한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짐.
과점주주	·주주 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

□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해당 법인의 채무에 관해서 출자액과 관련 없이 무한한 책임을 지게된다는 점, 「국세기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
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⁵⁾하고 있음.

- 「국세기본법」 제40조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의 재산으로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일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이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
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⁶⁾하고 있음.

5)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 참고로, 「국민연금법」 제90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등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한 사례가 있음.

○ 개정안은 이와 같이 채납자의 재산이 은닉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에 대해 과세관청이 재산조회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고액·상습 탈세자로부터의 강제 징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금융위원회는 개정안과 같이 현행 세법 상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자 등에 대한 「금융실명법」에 따른 재산조회 대상자 확대 등은 금융거래 비밀보장이라는 「금융실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6

3.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계산방식은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차액에 전체 출자총액 대비 해당 출자자의 출자액의 비율을 곱하는 방식임)